함께지키는 우리의 개인정보 #6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핵심 KEY POINT

알쏭달쏭,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일까? 제3자 제공일까?

구분	업무 위탁(법 제26조)	제3자 제공(법 제17조)
개인정보 제공 목적	**위탁자의 이익을 위함**	**제3자의 이익을 위함**
처리 방법	정보주체 동의 없이, 위·수탁 계약에 의해 처리하고, 위탁사실을 공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 ※ 법 제17조1항2호 예외
관리·감독 의무	위탁자	제공받는 자
손해배상 책임	위탁자 및 수탁자 부담	제공받는 자 부담
예시	홈페이지 관리, 대행업체 (입시원서, 졸업앨범, 대학등록금, 수학여행 등)	청렴도 조사(공공기관 → 권익위), 병무행정업무(학교 → 병무청) 등

※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업무 위탁,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계약 전 01

▶ 위·수탁 문서 작성*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필수항목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안전성 확보 조치, 재위탁 제한, 관리점검 등 감독, 손해배상 책임

업무 수행 중 02

▶ 위탁사항 공개*(홈페이지, 관보 등)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단, 마케팅 위탁의 경우 서면등의 방법(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고지
▶ 수탁자 교육 및 감독

업무 종료 후 03

▶ 개인정보의 파기(5일 이내)·반환 및 결과 확인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privacy.moe.go.kr) → 공지사항 → 참고자료 참조 바랍니다.